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제 주 4 · 3 사 건 진 상 규 명 및 희 생 자
명 예 회 복 에 관 한 특 별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진 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총 6회에 걸쳐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를 받아왔으나, 여전히 일가족 사망, 해외이주 등으로 피해신고를 하지 못한 희생자 및 유족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들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피해신고기간을 재설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근거 마련
(안 제8조제1항 후단 신설)

나. 보증인의 범위 확대(안 제8조제1항제3호 단서 개정)

현행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이 곤란한 경우 제주 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2명의 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보증인 자격제한으로 인해 4·3사건 당시 타지역에서 제주도를 방문했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구제책 마련 필요.

다.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시 제출해야하는 첨부 서류 정비

- 1) 희생자의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한 첨부서류를 보완·정비하여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의 원활한 처리를 돕고, 향후 통계자료 관리·복지사업 등에 활용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1호 본문 및 단서 개정)
- 2)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 그동안 신고 업무지침에 따라 제출해오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2명의 보증서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함.
(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라. 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기간 재설정(안 제8조제2항 개정)

희생자 및 유족이 추가적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신고기간을 재설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제8조제1항제1호 단서 중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을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이나 제주4·3사건 당시 희생자의 피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2호의3서식
을 각각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 ① 법 제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그 유족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 희생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u>희생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u>	----- ----- ----- ----- ----- ----- ----- ----- ----- ----- ----- ----- ----- ----- ----- ----- ----- <u>.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1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u> 1. <u>희생자의 유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 각 1부. -</u>

우로서 사망자·행방불명자의 유족에 한정한다) 1부. 다만,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생략)

3.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다만, 이를 첨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 중 2명이 각각 또는 연명으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증서

<신설>

가족관계증명서 -----

2. (현행과 같음)

3. -----
-----.
-----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이나 제주4·3사건 당시 희생자의 피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

4.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봉행하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유족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자를 말한다.) 2명이 작성한 별지 제3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u>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u>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u>서식에 따른 보증서</u> ②----- <u>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u>-----. ③ · ④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연 락 처	(044) 205 - 3258